

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시설용지(장구리 576-1) 처분(매각) 공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'산업집적법')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(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) 내 산업용지를 다음과 같이 처분(매각)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8일(수)
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
1.

처분대상 용지

용 도	업 체 명	처분 소재지	처분내용	처분가격(원)
산업시설구역 (공장용지)	(주)백*	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76-1번지	대 지: 18,129.3㎡ 건축물: 4,211.12㎡	8,642,689,000

*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 제5항에 따른 양도가격
가. 처분가격 : ₩8,642,689,000(금 팔십육억사천이백육십팔만구천원 정)

나. 대금지불조건 : 일시납 *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

*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하나, 매매계약 및 등기(소유권)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(30일) 이내 완료하여야 함

다. 처분관련 유의사항

- 매수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처분을 제한받게 됨
- 본 처분 건 관련,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,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

※ 신청인은 매각용지의 개발·실시계획, 지구단위계획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

2.

신청자격 및 제한업종

가. 산업집적법 제2조 및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'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'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6-19호(2026.4.13))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

나. 우선 유치대상 (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)

-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
-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(확장) 기업
- '중소기업 창업지원법'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(신청일 현재) 창업 승인된 기업
- '국토계획법'상 주거, 상업,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
-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

다. 입주제한

- 토지이용계획 사항 (관련 법령 확인)

지역지구등 지정여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지구등	도시지역,일반공업지역(2014-11-28), 지구단위계획구역(2014-11-28), 중로1류(폭20m~25m)(2014-11-28)(접합)
	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	가축사육제한구역(2026-06-15)(절대금지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일반산업단지<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>, 산업육성구역(2020-11-17)<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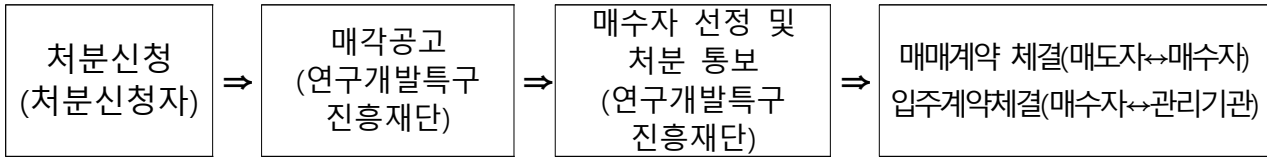
- 생산공정 단계별 「악취방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

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

- 도금 및 도장업종([붙임2]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참조)
- 산업집적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

3.

처분(매각) 절차



4.

처분(매각)일정

구 분	기 간	비 고
처분공고 및 서류 접수	'26. 7. 8.(수) ~ 7. 23.(목)	우편 또는 방문접수
입주심사(필요시)	'26년 7월 5주차	별도 공지
양도대상자 선정통보	'26년 8월 1주차	별도 공지
매매계약 체결	양도대상자 선정통보 후	양도자-양수자 협의
소유권 이전	양도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내	-
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 체결	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내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- 양수자 -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에서 신청 (ims.innopolis.or.kr)

* 상기 일정은 입주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5.

서류접수 및 제출서류

가. 접수일 : 2026. 7. 8(수)~7. 23.(목)(접수마감일 : 7/23(목), 18:00까지)

나. 접수처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, 전북테크
비즈센터 3층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(문의: 063-905-9743)

다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(접수 마감일 업무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)

○ 접수서류 일체 제출 요망 (제출서류는 원본 제출)

*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, 사전 접수 요망

*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라. 제출서류 :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공통서류	○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각 1부_(붙임 3, 4 참고) ○ 법인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(개인) 1부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○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(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) 1부 ○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○ 종람확인서 1부	각 1부
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(해당기업 에 한함)	○ 최근 2년, 표준재무제표 증명원(국세청) 1부 ○ 공장등록증명서(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) 1부 ○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(1~5종) 1부 ○ 신기술(NEP,NET), 특허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○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(한국무역협회, 거래은행 발행) 1부 ○ 우선 유치대상에 해당할 경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	

* 모든 증빙서류는 **개인정보를 삭제**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* 신청자는 입주자격 요건 및 입주제한 요건을 사전에 관련 인·허가권자에 문의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양도대상자 선정 심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할 수 있음

6.

입주심사

가. 선정방법 : 신청자 입주자격 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 「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76호)」에 따른 **입주기관심의회**의 심의 후 대상자 선정

* 비경합(1개 기업 접수)일 경우, 연구개발특구에서 적격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

나. 심의내용 : 입주자격 여부 및 사업계획 평가

* 입주심사 평가기준 : [붙임5] 참조

다. 선 정 일 : 별도 공지

* 접수마감 결과에 따라,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

라. 기타내용 : 매수자로 선정된 선순위 기업이 입주계약, 매매계약을 포기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후순위를 양도대상자로 선정

7.**매수자 자격상실**

- (1)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(2)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(3)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(또는 기업체)으로 신청한 경우

8.**유의사항**

- 신청자는 특구재단이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(등기이전)을 완료하여야 하며,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(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)
-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하에 협의·처리하여야 함
-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·건축물 현황, 압류여부, 업종, 환경 인·허가 여부,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·행정적·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
-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(계약)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·행정적·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(계약) 주체에 있음
-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
-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, 처분공고에

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

※ 입주기업체(처분신청자)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(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)

- 매수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,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,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,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령과 건축 관련 법령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·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신청자에게 있으며,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야 함

※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·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

-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, 환경관리 등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
- 토지사용 시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,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우수·오수·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·연결하여야 하며, 토지 사용 중 도로·상하수도·경계석·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·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함
- 가스, 통신, 전력, 용수, 유선방송,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

-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(시행령, 시행규칙), 「산업단지 관리 지침」,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·실시계획·지구단위계획,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에 따름
-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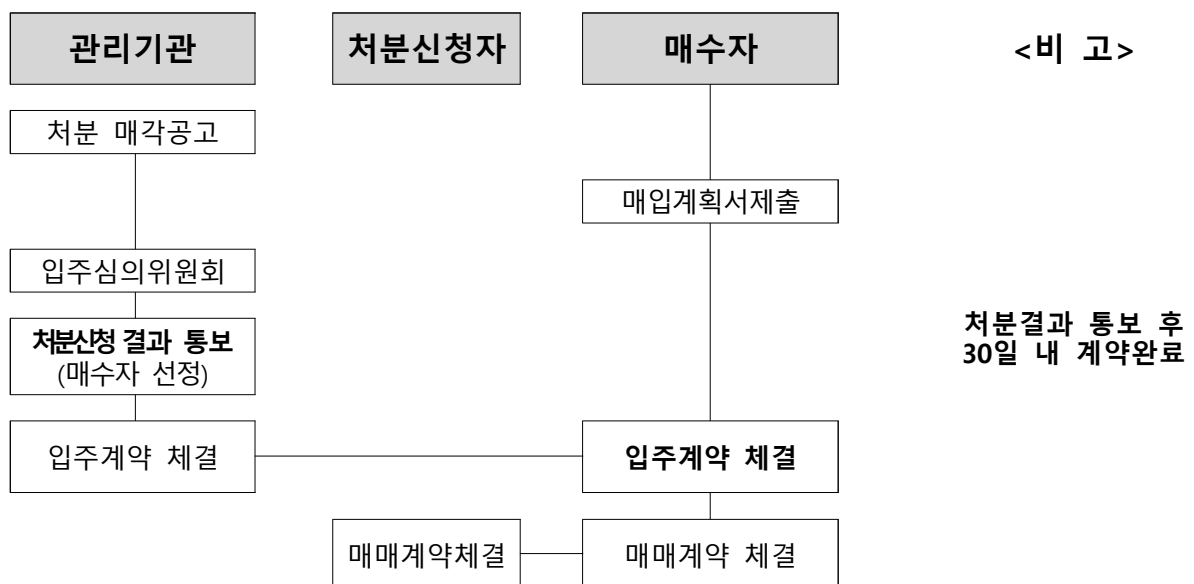
9.

문의처

구 분	담당자	주소 및 연락처
관리 기관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이규민 연구원 - 제출서류 관련 문의	·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,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 전북특구본부 · ☎ 063-905-9743
처분 신청자	(주)백산 - 대금지불, 계약, 토지 현황, 압류여부 등	· (본사)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뎬로 37길 56, 건영빌딩 6층 · ☎ 031-8084-07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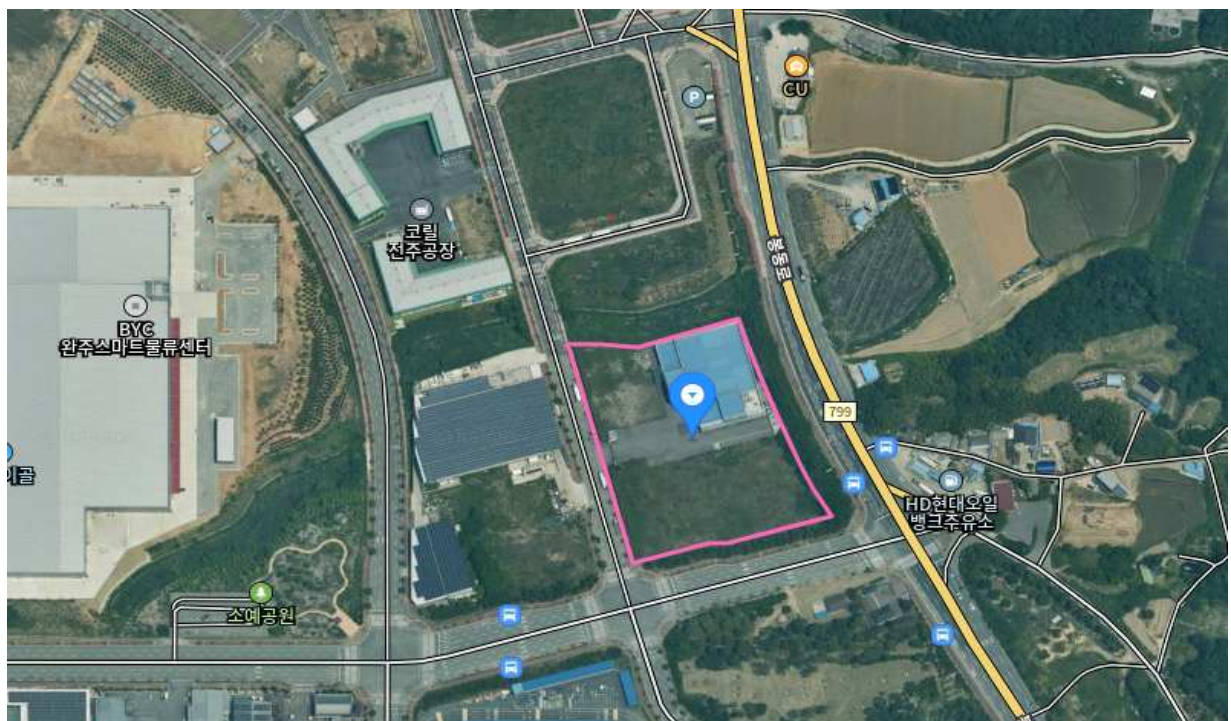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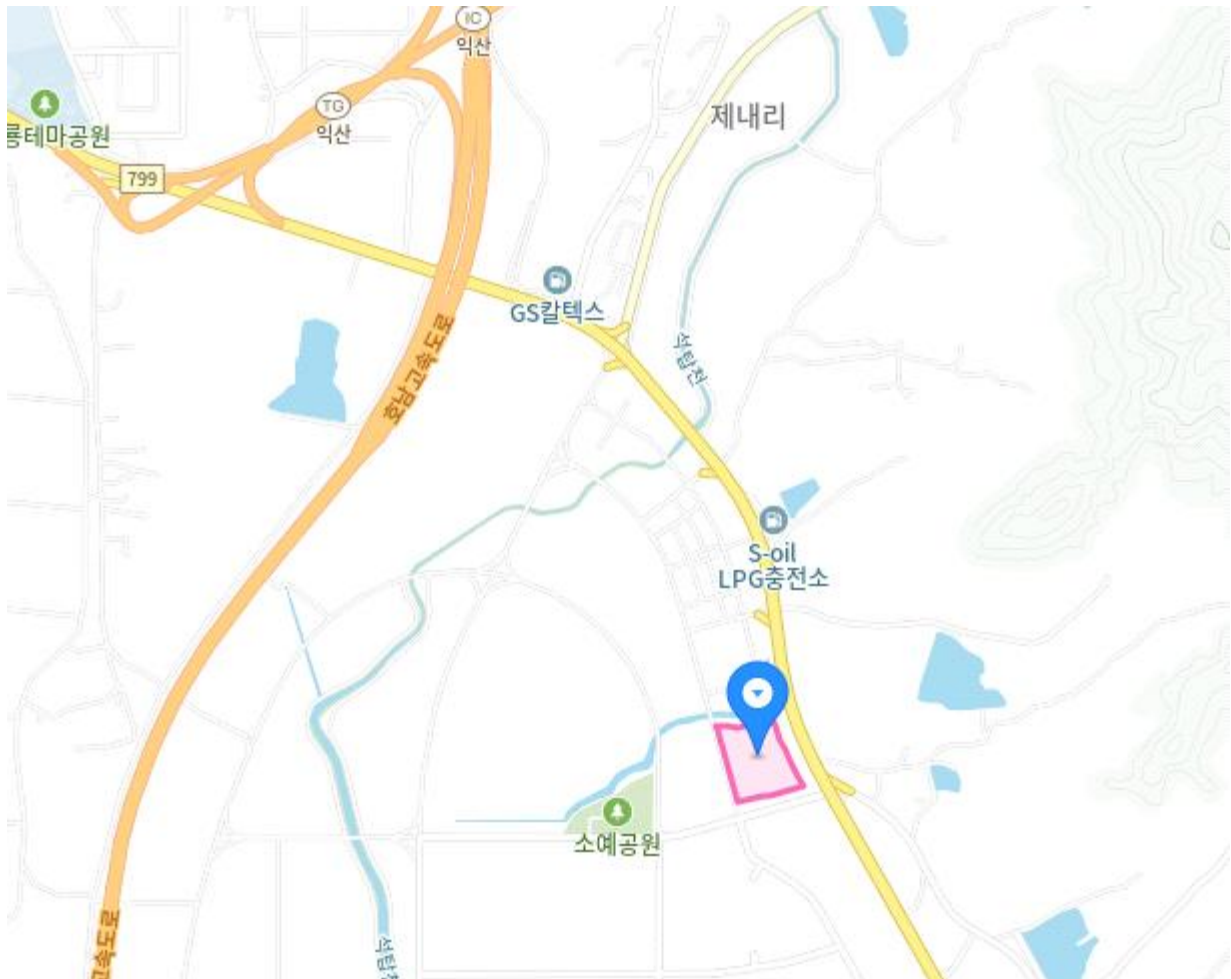
10.

주요절차



- 붙임 1. 처분(매각)공고 대상지
2.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
3. 입주신청서
4. 사업계획서
5. 입주심사 평가기준
6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7. 종람 확인서

붙임1. 처분(매각)공고 대상지(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76-1번지)



붙임2.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

*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

구 분		완주 테크노밸리 (1단계)
산업 육성 구역	관련 규정	-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 · 전라북도 고시 제 2017-100호(2017. 05. 25.) -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 ·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-132호(2025.05.16.)
	입주 가능 업종	-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, 1차금속 제조업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전기,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, 연구개발업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,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-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7, 21, 22, 24, 25, 27, 29, 30, 31, 35, 52, 70, 20, 23, 26, 28, 10897, 63*에 해당하는 업종 * 정보서비스업(63)은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78-6번지에 입주한 기업에 한함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5 ‘첨단업종’ 및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(첨단기술·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) 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, 7120 및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(1)부터 (8)에 해당하는 자 -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· 임대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(제조업은 공장등록,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) · 공급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(지식산업센터에 한함. 단,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)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- 단,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
	환경 관리 기준	- 생산공정 단계별 「악취방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- 다만,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, 산업단지 조성취지, 환경·소음·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

붙임3. 입주신청서

신청번호		2	0	2	6	-			*신청번호는 관리기관에서 작성		
전북연구개발특구 완주테크노밸리 1단계 산업시설용지 입주신청서											
신 청 인	회 사 명						법인등록번호				
	대 표 자						사업자등록번호				
	대표자주소 (법인소재지)		(T : , F :)								
신 청 내 용	회 사 명						대 표 자				
	신청지번		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2로 178(장구리 576-1)								
	신청업종		업 종 (한국표준산업분류표)		분류번호 (세세분류5단위기재)		생산제품(연구분야)				
			※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()								
	공장건축계획 (단위:m ²)		부지면적		건축면적 (제조+부대)		제조시설면적		부대시설면적		
기 존 공 장	소 재 지	공 장	(T : , F :)								
		연 구 소	(T : , F :)								
	입주형태		(분양)		(임차)		(기타 :)				
	입주업종		업 종 (한국표준산업분류표)		분류번호 (세세분류5단위기재)		생산제품				
			※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()								
	규 모 (단위:m ²)		부지면적		건축면적 (제조+부대)		제조시설면적		부대시설면적		
매 출 액		백만원		종업원수		총 계		남 여			
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완주테크노밸리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회사명(대표자) : (인)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											
첨부서류		1. 매입계획서(소정양식)1부 2. 사업자등록 증명서 /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. 기타 각종 증빙서류(입주심사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)									

붙임4. 사업계획서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2서식] <개정 2020. 2. 28.>

(제1쪽)

사 업 계 획 서

20

회 사 명
대 표 자

직인

1. 사업개요

업체 현황	회사	명칭			
		주소			
		전화번호		팩스번호	
		홈페이지 주소	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성명		이메일 주소	
		주소		생년월일	
		전화번호		팩스번호	

생산 제품 현황	업종(5단위)				
	생산품명				
	주 원자재				

공장 현황	공 장 주 소					
	형 태		분양() 경매() 양도() 양수() 임대()			
	용 도 지 역					
	지 목					
	공 장 건 설 계 획	사업자등록번호				
		착공 예정일				
		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				
		사업 시작일				
	공 장 의 규 모	종업원 수	국내	남		
				여		
			국외	남		
				여		
		용지 면적			㎡	
		건축 면적			제 조시설:	㎡
					부대시설:	㎡
건축 면적/용지 면적						
기준공장 면적을			%			
건폐율			%			
용적율			%			

투자 규모	계		백만원		
	자기자본		백만원		
	타인자본		백만원		
	외국인 투자금액		천불		
	외국인 투자비율		%		

공 장 보 유 구 분	자가()	공 장 설 립 형 태	신규 건립 입주()	공 장 규 모	대()
	임차()		기존 건물 입주()		중() 소()

기재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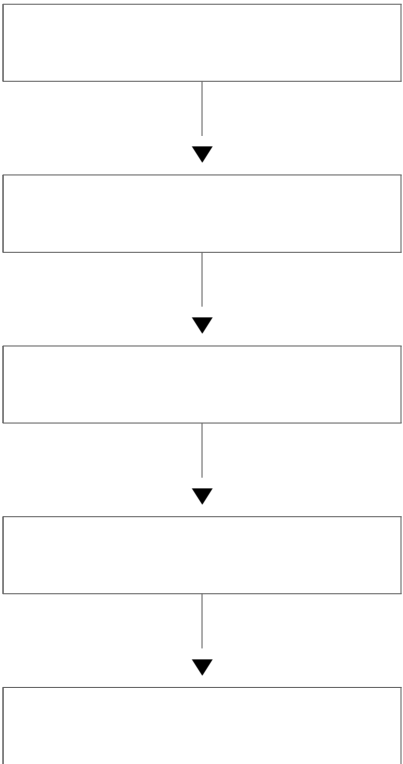
1. 업종은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(5단위)까지 적습니다.
2.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
3. 공장규모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.

2. 공장건설계획

구 분	현 재	년	년	년	계
제조시설					
부대시설					
- 부대시설 세부용도					
계					

※ 작성요령 :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.

3. 생산공정도 해설

생산공정도	생산공정 요약 설명
 <pre> graph TD A[] --> B[] B --> C[] C --> D[] D --> E[] </pre>	

4. 생산시설 명세

시설명	용량	수량	비고

5. 배출시설 명세

시설명	용량 및 규격 (HP · kW · m³)	수량	배출오염물질		비 고
			종류	배출량	
					대 기 ()종 수 질 ()종 소음 · 진동(유 · 무)

※ 작성요령 :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 · 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.

6. 용수 · 전력 · 연료의 사용계획

용수(톤/일)		전력(kW/일)		연료		
생활용수 (상수도 · 지하수)	공업용수 (상수도 · 지하수)	일반전력	자가발전	석유 (ℓ/일)	가스 (m³/일)	기타 (톤/일)

7. 공장배치도

붙임5. 입주심사 평가기준

평가항목		주요 심사 내용
기본 사항	우선유치대상	관리계획상 우선유치 대상 여부
	건축 계획의 타당성	• 착공 및 준공시기와 부지 활용방안 • 건축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• 건축계획의 적정성 및 주변 부지와의 조화 등 • 기타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
	재무안정성 및 자금계획	•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 및 안정성 • 건축 진행상의 자금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• 부지매입 및 건축 진행상의 자금 조달 능력 및 가능성 등
사업 계획	사업수행 및 향후 파급효과	• 사업계획의 적정성 • 기업 성장가능성 및 향후 전망 등 • 기업입주로 인한 기대(파급)효과(성장성, 안정성, 규모지표 등)
	특구조성 목적과의 부합성	•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주변여건 및 환경과의 조화 • 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환경관련 저해요인 저감방안 등 • 첨단산업 및 지식·정보산업 등에 부합하는 쾌적한 산업시설 구축 •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과 연계성 강화 등 • 산·학·연 주체와의 상호협력 활성화 여건

< 심사 참고사항 : 입주대상기업의 기본점검사항 >

□ 입주자격 및 입주제한 여부

-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종, 건축계획에 해당하지 않은 자
-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,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처리계획

□ 우선 유치 대상

-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
-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(확장) 기업
- ‘중소기업 창업지원법’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(신청일 현재) 창업승인된 기업
- ‘국토계획법’상 주거, 상업,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
-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

붙임6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신청을 위하여,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.

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산업단지 입주관련 신청
-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, 전화번호(회사 및 휴대폰)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시까지
- 동의 거부 권리 안내 :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주계약이 제한됩니다.

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동 의 일 : 2026. . .

동 의 인 : (서명)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귀하

붙임7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종 란 확 인 서

☐ 확인자

업 체 명 (법 인 명) :

법 인(주 민)등 록 번 호 :

대 표 자 : (인)

상기 본인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 단지 내 산업용지를 매수 및 입주하고자 하는 바, 공고내용에 따라 사전에 관리(변경)계획, 산업단지(변경)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, 지구단위계획, 부지실태, 임차관계, 도면, 주요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추후 매수한 산업용지에 대한 지질(성토, 지반등) 및 지형(경계선 등)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귀하